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수신 [redacted] 대학교총장(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강민정, 박성혜)
(경유)

제목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2020-522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1. 귀 기관 소속 [redacted] 대학교 조교수 [redacted] 제기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0. 12. 2. 불임의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결정서는 관할청(「사립학교법」 제4조 등 참조)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 결정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임 결정서 1부. 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김정희	사무관	정근목	심사과장	김효신	상임위원	이경희
위원장	2020.12.16. 서유미						

협조자

시행 심사과-17523 (2020. 12. 1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어진동) / <http://www.ace.go.kr>

전화번호 044-203-7426 팩스번호 044-868-8125 / @korea.kr / 비공개(6)



결 정 서

사 건 : 2020-522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REDACTED]

소속 [REDACTED] 대학교 직위 조교수

피청구인 : [REDACTED] 대학교총장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강민정, 박성혜

심 사 일 : 2020. 12. 2.(출석)

결 정 일 : 2020. 12. 2.

피청구인이 2020. 8. 27.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9. 1.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27.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2006. 9. 1. [REDACTED] 대학교 신학과 전임강사(이후 조교수로 직위명 변경)로 임용된 후 매 2년마다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8. 8. 31. 임용기간을 2018. 9. 1.부터 2020. 8. 31.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2. 12. 교원징계위원회에 청구인의 2019년도 여름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과 관련된 징계원인사실에 대하여 증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 30. 청구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30. 청구인의 학교법인 [REDACTED]대학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처분 취소 청구사건(2020-121)의 결정 확정일과 2020. 8.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구인에게 2020학년도 2학기 재임용 신청서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7. 20. 피청구인에게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7. 31.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2020. 8. 6.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의제기 및 출석 소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바.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27. 청구인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2. 처분 사유

가. 심의결과: 재임용하지 아니함

나. 재임용 거부 사유: 본교 「교원인사규정」(3-2-1) 제15조(재임용)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재임용 평정에서 70% 미만은 재임용 탈락한다.) 미충족으로 인한 부결

붙임 재임용 심사 합산표 및 미충족 항목별 사유 1부. <별첨1>

3. 청구인 주장

가. 「교원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재임용 심사) 제3항에 재임용심사의 각 업적평가 주요기준(별표9, 별표9-1, 별표9-2)이 제시되어 있는데, 평가항목 ‘3. 학생지도 실적’ 이하 ‘10. 학과평가’까지의 모든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정량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며, 평가기준에 대한 별도의 정량적 세부지침도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재임용심사 합산표 및 미충족 항목별 사유’에 교회 봉사활동을 20점 만점에 0점을 부여하면서 그 사유를 ‘학교가 허용한 지교회(대학교회) 출석이 아닌 자료 제출로 평가반영 없음’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유효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21점 만점에 8점을 부여한 총장 근무평가는 유효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으며, ‘재임용심사 합산표’의 3. 총장 근무평가의 ‘출퇴근상태’는 <별표 9>의 6. 총장 근무평가의 평가기준에 없다. 나아가 청구인에 의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 대상이 되었으며 형법상 범죄혐의로 고소·고발당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라. 기타사항 접수에서 ‘학교와의 갈등으로 교수 간에 관계 등이 원만하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미충족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어서 위법하다.

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민원과 피청구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고발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배경이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 교원 인사 규정

제15조(재임용) 기독교인으로 무흠한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연간 150%의 연구실적을 초과하는 교원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할 수 있다.

- ① 재임용은 전임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단,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 가.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 나.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다. 교육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②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 나. 재임용 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구실적, 학생지도능력, 교수로서의 자질을 교원승진 및 재임용에 따른 심사기준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 1) 현직 임용시부터 통산연구 실적
 - 2)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사항
 - 3) 학생지도능력
 - 4) 교수로서의 자질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 5) 본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노선이나 신학사항
 - 다. 임용기간이 만료되고도 재임용되지 않는 자는 교원의 직에서 해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임용 평정에서 70%미만은 재임용 탈락한다.

■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3조(재임용 심사)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만료 4개월 전에 의무연구실적물이 초과된 재임용심사신청서(별표7)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대상자들을 심사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재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 중 의무연구실적물이 초과된 자로서, 각 업적평가 주요기준(별

표9, 별표9-1, 별표9-2) 결과 7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④ 재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 중 소속 교회의 예배참석 및 봉사활동(기준 점수 20점)과 대학의 경건생활(기준 점수 21점) 및 주요 행사 참여 실적(기준 점수 10점)에서 각각 8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강의 시수 제한 및 감봉할 수 있다.

[별표9]

재임용 및 승진에 적용할 업적평가 주요 기준

평가항목	기준점수	평가기준	비고
1.연구실적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충족시 33점 ※ 300%이상(33점), 250~300%미만(30점), 200~250%미만(25점), 150~200%미만(20점), 100~150%미만(10점), 0~100%미만(5점) • 연구비 수주: 가점 5점 ※ 연구비 1점: 300-500만원 / 2점: 500-1,000만원 3점: 1,000-2,500만원/ 4점: 2,500-3,000만원 5점: 3,000만원 이상 	
2.강의평가	15	5+ [10×(1-순위/전체 교원 수)]	
3.학생지도 실적	10	학생지도/학생상담/면학분위기 조성	
4.학생모집 활동	10	학생유치 및 학교홍보 참여	
5.교회봉사 활동	20	전 가정의 예배참석, 공식예배, 봉사, 의무 등(담임목사 득점화)	
6.총장근무 평가	21	경건예배 참석, 교원 간 친화, 대학 공헌도,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한 활동, 인성 등(총장 득점화)	
7.학교행사 참여	10	주요 행사참여 실적	
8.사회봉사 실적	5	사회적 책임감/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도	
9.기타사항	6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가정 유지/교수 간 화합 등	
10. 학과 평가	취업률	20	51%를 목표로 함(직전년도 정보 공시사항 참조)
	신입생 충원률	5	100% 목표로 함(직전년도 정보 공시사항 참조)
	재학생 충원률	5	90% 목표로 함(직전년도 정보 공시사항 참조)
계	160		

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 절차의 적법 여부

1)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여부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에 관한 평가결과와 각 평가항목의 평점 및 평정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교원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221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2020. 8. 6.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재임용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재임용 심사 합산표에 ‘연구실적 30점/33점 충족, 강의평가 15점/12.34점 충족, 학생지도 실적 10점/6점 미충족, 학생모집 활동 10점/7.20점 충족, 교회봉사 활동 20점/0점 미충족, 총장근무 평가 21점/8점 미충족, 학교행사 참여 10점/8.80점 충족, 사회봉사실적 5점/3.10점 미충족, 기타사항 6점/3.40점 미충족, 취업률 20점/10.30점 미충족, 신입생 충원을 5점/5점 충족, 재학생 충원을 5점/2.7점 미충족, 합계 160점/99.84점 미충족, ※ 재임용 기준: 70% 이상(112점)’이라고만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다)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출석에 의한 의견진술 및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의견진술이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재임용 심사 합산표’만으로는 청구인이 각 평정항목별 평정의 사유와 근거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청구인으로서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절차는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재임용 거부 처분 최종 통지의 적법 여부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의하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임용 거부가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임용 거부사유 통보에 관한 위 규정의 주된 취지에 본인에게 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된 사유와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교원이 재임용 거부 당시의 전후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에 대한 구체적인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는 적어도 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된 해당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1. 4. 11. 선고 2010구합460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2020. 8. 27.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통지하면서 ‘재임용 심사 합산표 및 미충족 항목별 사유’에 ‘연구실적 33점/33점 충족, 강의평가 15점/12.34점 충족, 학생지도 실적 10점/6점 미충족, 학생모집 활동 10점/7.20점 충족, 교회봉사 활동 20점/0점 미충족, 총장근무평가 21점/8점 미충족, 학교행사 참여 10점/8.80점 충족, 사회봉사실적 5점/3.10점 미충족, 기타사항 6점/3.40점 미충족, 취업률 20점/10.30점 미충족, 신입생 충원율 5점/5점 충족, 재학생 충원율 5점/2.70점 미충족, 합계 160점/99.84점 미충족, ■ 미충족항목별 사유 1. 학생지도 실적: 수업방해 원인 제공(외부인과 강의실에서 다툼이 있어 수업이 중단됨), 2. 교회봉사활동: 학교가 허용한 지교회 출석이 아닌 자료 제출로 평가반영 없음, 3. 총장근무평가: 출퇴근 상태, 교수 간 인화단결, 대학설립 목적 기여 활동, 대학발전 기여도 등(근무지 무단이탈, 공동체보다 개인 유익에 치중함, 학교 설립목적 기여 활동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사회봉사 실적: 2019년도 실적이 없음, 5. 기타사항: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가정 유지/교수 간 화합 등(학교와의 갈등으로 교수 간의 관계 등이 원만하다고 보기 어려움), 6. 취업률: 정량평가, 7. 재학생 충원율: 정량평가’라고만 기재하여 재임용하지 않겠다고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재임용 심사 합산표 및 미충족 항목별 사유서’에 교회봉사활동을 20점 만점에 0점을 부여하면서 그 사유를 ‘학교가 허용한 지교회(대학교회) 출석이 아닌 자료 제출로 평가반영 없음’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유효한 사유가 될 수 없고, 21점 만점에 8점을 부여한 총장근무평가는 유효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으며, ‘재임용심사 합산표’의 3. 총장근무평가의

‘출퇴근상태’는 <별지 9>의 6. 총장근무평가의 평가 기준에 없고, 청구인에 의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 대상이 되었으며 형법상 범 죄혐의로 고소·고발당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기타사항 점수에서 ‘학교와의 갈등으로 교수 간에 관계 등이 원만하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미충족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위와 같은 재임용 거부 통지만으로 청구인이 재임용 거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 결과가 어떻게 산출되어 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되었는지 해당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재임용 심사 기준의 적법 여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

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임용의 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교원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재임용 심사) 제3항에 재임용심사의 각 업적평가 주요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평가항목 ‘3. 학생지도 실적’ 이하 ‘10. 학과평가’까지의 모든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정량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며, 평가기준에 대한 별도의 정량적 세부지침도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재임용 및 승진에 적용할 업적평가 주요 기준(별표9)을 보면 “3. 학생지도 실적”의 평가기준은 “학생지도/학생상담/면학분위기 조성”, “4. 학생모집 활동”의 평가기준은 “학생유치 및 학교홍보 참여”, “5. 교회봉사 활동”의 평가기준은 “전 가정의 예배참석, 공식예배, 봉사, 의무 등(담당 목사 득점화)”, “6. 총장근무 평가”의 평가기준은 “경건예배 참석, 교원 간 친화, 대학 공헌도,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한 활동, 인성 등(총장 득점화)”, “7. 학교행사 참여”의 평가기준은 “주요 행사참여 실적”, “8. 사회봉사 실적”의 평가기준은 “사회적 책임감/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도”, “9. 기타사항”의 평가기준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가정 유지/교수 간 화합 등”, “10. 학과평가(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의 평가기준은 “51%를 목표로 함(직전년도 정보 공시사항 참조), 100% 목표로 함(직전년도 정보 공시사항 참조), 90% 목표로 함(직전년도 정보공시사항 참조), ※ 취업률은 평가에서 해당되지 않는 학과는 평균 취업률 적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학칙이 정하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평정의 방법이나 평가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

므로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어긋나는 위법한 평가기준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임용 심사 합산표 및 미충족 항목별 사유>

* 재임용 기준: 70%이상(112점)

연구실적	강의평가	학생지도 실적	학생모집 활동	교회봉사 활동	총장근무 평가	학교행사 참여	사회봉사 실적	기타사항	취업률	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	합계
(33)	(15)	(10)	(10)	(20)	(21)	(10)	(5)	(6)	(20)	(5)	(5)	(160)
33.00	12.34	6.00	7.20	0.00	8.00	8.80	3.10	3.40	10.30	5.00	2.70	99.84
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 비고 : 연구실적은 충족이나 제출된 논문이 본교의 신학적 견해(개혁주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의견서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 미충족항목별 사유

1. 학생지도 실적: 수업방해 원인 제공(외부인)과 강의실에서 다름이 있어 수업이 중단됨)
2. 교회봉사활동 : 학교가 허용한 지교회 출석이 아닌 자로 제출로 평가 반영 없음.
3. 총장근무평가: 출퇴근 상태, 교수간 인화단절, 대학설립 목적 기여 활동, 대학 발전 기여도 등 (근무지 무단이탈, 공동체 보다 개인 유익에 치중함, 학교 설립목적 기여 활동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사회봉사 실적: 2019년도 실적이 없음.
5. 기타사항: 그리스도 인으로 합당한 기정 유지/교수 간 화합 등. (학교와의 갈등으로 교수 간의 관계 등이 원만하다고 보기 어려움.)
6. 취업률: 정량평가
7. 재학생 충원률: 정량평가

2020. 12.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유미 서유미

상임위원 이경희 이경희

위원 길인옥 길인옥

위원 김이경 김이경

위원 손종학 손종학

위원 오행자 오행자

위원 이종근 이종근

위원 정현미 정현미

위원 한범수 한범수



위 정본임.

2020. 12.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